

공유수면 점·사용허가에 관한 고시

포항시 고시 제 2017 - 57호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
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·사용허가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.

- 허가번호 : 17-09
- 점용위치 : 흥해읍 칠포리 377-18번지 지선 앞
- 점용목적 : 파도막이 옹벽 및 방파 설치
- 허가기간 : 2017.04.27. ~ 2037.05.31
- 허가면적 : 495㎡
- 허가일자 : 2017. 4. 27.
- 피허가자 주소 : 포항시 남구 시청로1(포항시청)
- 피허가자 성명 : 포항시청

2017. 4. 27

포 항 시 장

